



아산문화재단 재무감사 결과



1. 개 요

□ 실시 근거

-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적용범위)
-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수탁사무 감사)
-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감독 등)

□ 감사 개요

- 감 사 대 상 : 아산문화재단
 - 관련부서: 문화관광과
- 감 사 기 간
 - 사전조사 : 2019. 1. 14. ~ 1. 18.
 - 본 감 사 : 2019. 1. 21. ~ 1. 30. (기간 중 8일간)
- 감 사 범 위 : 2017. 1. 1. - 2018. 12 31.
- 감 사 인 원 : 회계감사팀장 외 3인 (감독부서 1명 포함)

□ 감사 중점 사항

- 관련 규정에 따른 인력(조직) 관리
- 출연금 등 예산 회계처리 적정 여부(목적 외 사용, 과다 집행 등 적정여부 확인)
- 기타 운영전반 업무처리 및 제반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사업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사항 파악으로 향후 기관 운영의 활성화에 반영

II. 감사 결과

① 총 평

- 아산문화재단의 출연금 등 예산 회계처리 적정 여부 및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 기관 운영의 기준이 되는 운영규정의 내용 및 제·개정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향후 관리·감독 필요
 - 계약직 종사자에 대한 연봉 책정 기준 착오 반영 및 승진 처리 부적정 건이 지적되었으며 기관 전체 및 일부 종사자 개인의 인건비 급상승에 대한 적정성 검토 미흡
 - ☞ 향후 경영관리 직군 등의 정규(일반)직 전환으로 보수 관리체계 정비 및 고용안정 대책 필요
 - 도급계약 인지세 미부과, 선금지급 부적정, 일상감사 미이행, 지역개발공채 징구 부적정 등 계약업무 관련 건 다수 지적
 - ☞ 기관 내 전담 계약담당자 지정으로 업무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필요

②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합 계			변상명령 (금액)	징계 (인원)	시정 (금액)		주의
건수	금액	인원					
16	6,183,710원	3	-	-	8 (6,183,710원)		6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조치
			-	2	-	-	-

Ⅲ. 감사결과 처분 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종 류	금 액 (인원)	비 고
계	처분요구 16건 (아산문화재단 14, 문화관광과 2)	시 정 8 주 의 6 권 고 2	495,460 859,940 3,018,310 1,810,000	회수 여입 환급 추징
1	문화재단 운영 관련 조례 및 규정 등 정비 소홀	시 정 (2건)		
2	일할계산 대상 수당에 대한 지급방법 미준수	시 정	495,460	회수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관련	시 정	453,180	여입
4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주 의 권 고		
5	출연기관 예산 편성 및 경영공시 관련	주 의		
6	급여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회계처리 부적정	시 정	406,760 3,018,310	여입 환급
7	회계 전산(장부) 관리 소홀	주 의		
8	도급계약 인지세 미부과	시 정	1,810,000	추징
9	용역 선금지급 부적정	주 의		
10	행사 출연 사례금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징구 부적정	주 의		
11	계약업무 일상감사 미이행	주 의		
12	임직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 정		
13	계약직 연봉등급 조정 및 승진임용 부적정	시 정 권 고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문화재단 운영 관련 조례 및 규정 등 정비 소홀
-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 【행 정 상】** 시 정
- 【재 정 상】** 없 음
- 【지적내용】**

가. 현 황

○ 아산문화재단 권한대행 관련 조례 및 정관

구 분	조항 및 내용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회 운영)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아산문화재단 정관	제7조(이사장)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아산문화재단 운영 관련 규정

규 정	조항 및 내용	비 고
취업규정	제11조(부작위 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등 제63조(퇴직 및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퇴직 및 해고 시킬 수 있다. 21. 취업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인사규정 제57조(징계) 및 제58조
취업규정 일용직 관리규정	제25조(연차유급휴가) ③ 재단은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일용직)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관련조항 삭제)

규 정	조항 및 내용	비 고
취업규정	제66조(정년) 2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61세로 하고 정년이 되는 날이 상반기인 경우에는 6.30일, 하반기인 경우에는 12.31일에 퇴직한다.	정년 불일치
인사규정	제41조(정년) ①2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보수규정)	퇴직일 및 상실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추가 반영필요

나. 관련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마련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의 ‘권한대행’에는 ‘기관장 및 임원의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연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이 장이 선거 출마, 수감 등으로 권한 대행자(부시장)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업무도 수행’토록하고 있다.
 - 또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규정하였던 휴가 일수 공제사항은 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정년 및 퇴직일에 관하여는 관련조항을 명확히 설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아산문화재단에서는 정관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 출마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임이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였고,
 - 부작위 의무를 행하였을 경우는 인사규정 등에 의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에서 파면까지의 징계처분을 함이 타당함에도, 취업규정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및 ‘기타 재단취업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등 해고의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퇴직 및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는 사항은 관련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준수하지 않는 조항임에도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직원의 정년 등과 같이 유사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동일하게 정하여야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함에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4대 보험¹⁾ 등과 관련이 있는 퇴직일 및 퇴사일, 상실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관련 규정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

- 아울러 문화관광과에서는 조례 제정 및 문화재단 설립 후에 관련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마련한 지침에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에도 조례 및 문화재단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관련 법 및 출연기관 운영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정관 및 규정 등을 개정하여 재단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문화관광과장은

- 출연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재단의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문화재단의 자체 규정 등이 관련 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1) 4대 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일할계산 대상 수당에 대한 지급방법 미준수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행정상】 시 정

【재 정 상】 회 수 (495,46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교통보조금 지급 현황

(단위: 원)

성 명	직위(급)	입사(전직)일	지급액	실근무일수	적정지급액	과지급액
6명	계		910,000		414,540	495,460
***	공무직	2015.06.22.	130,000	11	47,670	82,330
***	일용직	2015.07.19.	130,000	19	79,680	50,320
	계약마급	2015.07.20.	130,000	12	50,320	79,680
***	계약라급	2016.02.23.	130,000	7	31,380	98,620
***	팀장	2017.07.11.	130,000	21	88,070	41,930
***	계약마급	2017.08.07.	130,000	25	104,840	25,160
***	코디네이터	2017.08.29.	130,000	3	12,580	117,420

나. 관련내용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에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 아산문화재단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

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에는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5조(보수의 계산)에 ‘임·직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함으로 아산문화재단에서 신규임용 또는 전직 등의 사유로 부가급여인 가족수당 및 교통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신규임용 월에 전액 지급함이 타당하나,

- 교통보조금은 보수규정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하여, 000 외 4명에 대하여 365,460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 아울러 2015년 7월에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직한 000의 교통보조금은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같은 달에 전직하여 각각을 일할 계산하여야 하였으나 전액을 계상, 결과적으로 중복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여 13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잘못 지급된 교통보조금 495,460원을 회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관련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행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여 입 (453,18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카드 사용 현황

소 계		주점사용		심야시간사용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23	1,172,100원	12	568,100원	11	604,000원

○ 50만원 이상 지출 현황(업무추진비)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내용	인원	비 고
18.12.12.	780,000원	아산시의원 간담회 식비	40명	상대방의 소속, 주소, 성명 등 미첨부

○ 카드 포인트 발생 현황

기준시점	발생포인트	부적정 내역	비 고
2019년 1월 현재	453,180원	세입조치 미실시	

○ 카드 관리·사용 및 대장 현황

클린카드 여부	카드 서명 여부	카드관리대장
부	부	미비치

나. 위법·부당내용

-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에 근거하여 아산시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경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접대성 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지침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요령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클린카드」를 공용카드로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아산문화재단에서는

- 상기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심야시간 및 주점에서 23건 1,172,100원을 집행하였고,
-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 2019년 1월 감사일 현재까지 발생한 카드 포인트 453,180원을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클린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일반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신용카드 사용후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아산문화재단이 법인 카드 사용 부적정, 발생한 카드 포인트의 세입 미처리, 클린카드 미도입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상기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

성지침」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감사일 현재까지 발생한 카드 포인트 453,18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 자체 수입 처리하시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클린카드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발급대장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퇴직급여 총당금 관련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행정상】 주 의 / 권 고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퇴직급여총당금 적립 현황(2018. 12월말 기준)

통장 잔고(A)	퇴직금 소요 추계액(B)	과 다 적립액(A-B)	적립 현황	비 고
90,854,037	79,210,409	11,643,628	- 17. 6월 30,000천원 적립 - 17. 8월 71,173천원 적립 - 18. 3월 62,943천원 적립	- 분기말 적립하여야 함에도 필요시 적립 - 정확한 추계액 산출 없이 임의 금액 적립

○ 퇴직급여총당금 통장 이자 처리 현황

발생일자	금액	처리 현황	비 고
17. 6. 17.	10,223원	18. 1. 4. 출연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	- 퇴직급여통장 발생 이자 는 퇴직급여총당금으로 적립 하는 것이 적정
17. 12. 16.	21,756원		
18. 6. 16.	35,442원	19. 1. 3. 출연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	- 18. 12월말 90,854천원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 적립
18. 12. 15.	39,189원		

○ 예금이자 비교(보통예금 대 정기예금)

보통예금 (18년 발생이자)	정기예금 (5,000만원, 1년 만기, 세후)	차 액	비 고
74,631	786,780	712,149	정기예금 예치 필요

※ 19년 1월 현재 : 정기예금 이자(1.86%) 기준

나. 위법·부당내용

-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에 근거하여 아산시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퇴직급여총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아산문화재단에서는
 - 퇴직금 추계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매분기별(분기말)로 적립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추계액 산출 없이 필요시 마다 적립하여 감사일 현재 11,643,628원을 과다 적립하였으며,
 - 퇴직급여총당금 통장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도 퇴직급여총당금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출연금 통장으로 이체하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 또한, 퇴직급여통장금 통장의 잔액 중 일부를 정기예금에 예치할 경우 현재 보통예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되어 퇴직급여총당금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 상기와 같이 아산문화재단이 퇴직급여총당금 적립 및 예금이자 처리

와 관련하여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향후, 퇴직급여총당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정확한 추계액에 근거하여 적립하시고, 퇴직급여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퇴직급여총당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또한, 퇴직급여계좌에 대해 정기에금 등을 활용하여 퇴직급여총당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출연기관 예산편성 및 경영공시 관련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아산문화재단에서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²⁾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사용하지 않고 기관 자체적인 분류 방식으로 예산 편성

- 예산서 첨부 서류 누락현황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
누락	미해당	미해당	누락

- 경영공시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공고	미공고	공고	공고

※ 예산공고시 수입·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 홈페이지 공개하여야 함에도 수입계획서 누락

2)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출연기관에 시달하는 지침으로 예산서 작성 서식(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기재),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공통회계처리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경영공시 누락 현황 :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경영실적 평가 결과,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나. 위법·부당내용

-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에 근거하여 아산시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하며,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예산에는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예산의 편성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경영공시)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아산문화재단에서는

-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예산 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과목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예산이월 설명서 등을 누락하였으며,
- 2017년 예산은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고 공개된 예산에도 수입현황을 누락한 채 공개하였다.
- 또한, 관련 법령에서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등을 경영공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 상기와 같이 아산문화재단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맞지 않게 업무 처리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향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예산과목 기준 미사용, 예산서 첨부 서류 누락, 경영공시 누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급여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회계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여 입 (406,760원), 환 금 (3,018,31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연말정산 환급금 처리 현황

- 국세청에서 환급받지 않고 출연금으로 직원에게 미리 지급

⇒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지출 처리

○ 급여 업무 처리 현황(4대보험)

- 본인부담금 : 공제 후 예수금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 기관부담금 : 출연금 통장에서 바로 납부

⇒ 4대 보험 납부를 2개 통장에서 분리하여 납부

○ 예수금(세입세출외현금) 통장 잔액 현황(2019. 1월 현재)

통장잔고(A)	집행예정액(B)	잔액(A-B)	비 고
9,747,860 (이자 7,115원 제외)	9,330,470	417,390	잔액(406,760원) 출연금 통장으로 여입 조치 필요

※ 집행예정액 : 세금 납부 예정액(6,312,160원) + 근로자 과다공제액(3,018,310원)

나. 위법·부당내용

-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에 근거하여 아산시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지방 출자·출연 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면,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등에 따라 사회보험 공단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산정하고,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납입의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 등을 문서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고지 받은 사업장의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등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일시보관금 통장에 보관한 후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아산문화재단에서는
 - 연말정산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은 후 직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함에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출연금에서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지출하고 향후 납부될 세금에서 상계 처리

- 하는 등 회계 처리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 처리를 하였고,
- 급여 작업시 4대 보험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공제하여 예수금(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체 후 해당 통장에서 일괄 납부하여야 함에도 개인부담금은 예수금 통장에 이체하여 납부하였으나, 기관부담금을 출연금 통장에서 직접 납부하였다.
 - 또한,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청구 받았으면 적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감사당일 현재 예수금 통장에 근로자에게 과다 공제한 3,018,310원 및 출처 불명의 406,760원 등 총 3,425,070원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아산문화재단이 연말정산환급금은 국세청으로부터 입금된 이후에 직원에게 환급해 주고, 4대보험 개인 및 기관부담금을 공제 후 예수금(세입세출외현금)으로 이체하여 일괄 납부되게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향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시고, 4대 보험 기관 및 개인부담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지출 후 일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다 공제한 4대 보험료 3,018,310원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주시고, 출처 불명의 406,760원은 출연금으로 여입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회계 전산(장부) 관리 소홀
-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 【행 정 상】 주 의
- 【재 정 상】 없 음
- 【지적내용】

가. 현 황

○ 회계 전산(장부) 관리 현황

소 계		전산 과소 입력 (입력누락, 금액 과소 입력 등)		전산 과다 입력 (이중, 과다입력 등)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23	88,042	16	81,306	7	6,736

나. 위법·부당내용

-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지도·감독)에 근거하여 아산시가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 「아산문화재단 회계규정」 제27조(전표)에 따르면, 모든 거래는 거래 발생전표에 의하여 전표를 기표, 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따라 기장하여야 하며,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및 대체(입금, 출금) 전표로 구분하되 회계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전표의 기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계 결의서(수입·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규정 제28조(회계장표 및 회계서류의 서식과 보존기간)에 의하면 회계장표 및 서류는 전산방식에 의하여 컴퓨터 파일이나 그 출력의 유인으로 대체기장 및 보관할 수 있으며, 회계부서에서는 분개장(전표 및 일계표), 총계정원장, 보조부(각 계정의 보조장부, 현금출납부), 기타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계정을 구분·정리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규정 제38조(현금출납부)에서는 출납원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 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금전의 확인)에서는 출납책임자가 매일 출납시간 종료 후에 현금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일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금은 매월 말에 예금잔액을 은행장부와 대조하고 매 반기 말 및 연말에는 은행의 예금 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그 잔액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함에도, **아산문화재단**에서는
 -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장표 및 서류를 전산방식에 의하여 관리하면서 출납원이 현금을 취급(입·출금)하였으면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 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전산 입력 누락, 이중입력, 금액 과다(과소) 입력하는 등 관계 장부(전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 그 결과 이는 출납책임자가 매일 출납시간 종료 후에 현금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고, 매월말·매 반기 말·연말에 은행의 예금 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그 잔액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 확인도 소홀히 하였다.

- 또한, **문화관광과**에서는
 -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아산문화재단이 회계장부(전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현금과 장부의 대조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향후 회계 처리 시 전산 입력 누락, 이중 입력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매월 말·매 반기 말·연말에 계좌 잔고와 대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도급계약 인지세 미부과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추 징 (1,810,000원)

【지적내용】

가. 현 황

- 아산문화재단에서는 2017 ~ 2018년 간 1천만 원 이상 물품, 용역 도급계약으로 총 69건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붙임 1] 1천만 원 이상 도급계약 인지세 미부과 현황 참조

나. 위법·부당내용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의하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 및 세액으로 제3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한다.

- 도급계약 문서별 과세금액으로 기재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 「아산문화재단 규정집」 제5편 제6장 제56조(계약)에 의하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 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그럼에도 아산문화재단에서는 [붙임 1]과 같이 1천만 원 이상 물품, 용역 도급계약 69건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지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총 1,810,000원을 세액을 누락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붙임 1] 1천만원 이상 도급계약 인지세 미부과 현황

(단위:원)

연번	계약일	계약 분야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세액	비고
합 계					1,810,000	
1	2017-02-16	이순신축제용역비	비공개	15,400,000	20,000	
2	2017-02-24	이순신축제공연비		33,000,000	40,000	
3	2017-04-12	이순신축제공연비		21,000,000	20,000	
4	2017-04-07	이순신축제 공연비		15,000,000	20,000	
5	2017-04-04	이순신축제용역비		60,000,000	70,000	
6	2017-04-14	이순신축제공연비		22,000,000	20,000	
7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19,602,000	20,000	
8	2017-04-11	이순신축제용역비		15,000,000	20,000	
9	2017-04-25	이순신축제용역비		43,965,000	40,000	
10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22,000,000	20,000	
11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139,700,000	150,000	
12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69,960,000	70,000	
13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18,779,000	20,000	
14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18,000,000	20,000	
15	2017-04-23	이순신축제용역비		15,016,000	20,000	
16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18,863,000	20,000	
17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30,000,000	20,000	

연번	계약일	계약 분야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세액	비고
18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비공개	19,522,000	20,000	
19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19,855,000	20,000	
20	2017-04-21	이순신축제용역비		22,000,000	20,000	
21	2017-04-08	이순신축제 홍보비		11,964,000	20,000	
22	2017-03-29	이순신축제용역비		17,000,000	20,000	
23	2018-04-16	이순신축제용역비		50,000,000	40,000	
24	2018-04-25	이순신축제용역비		18,000,000	20,000	
25	2018-03-16	이순신축제용역비		45,000,000	40,000	
26	2018-04-25	이순신축제용역비		11,486,000	20,000	
27	2018-02-28	이순신축제광고비		22,000,000	20,000	
28	2018-07-13	신정호별빛축제공연비		16,500,000	20,000	
29	2018-07-12	신정호별빛축제공연비		20,000,000	20,000	
30	2018-07-19	신정호별빛축제용역비		17,850,000	20,000	
31	2017-06-23	신정호별빛축제공연비		17,710,000	20,000	
32	2017-07-26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22,000,000	20,000	
33	2017-07-26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55,000,000	70,000	
34	2017-07-25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22,000,000	20,000	
35	2017-07-25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22,000,000	20,000	
36	2017-07-25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22,000,000	20,000	
37	2017-09-15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21,000,000	20,000	
38	2018-08-24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22,000,000	20,000	
39	2018-08-24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20,000,000	20,000	
40	2018-08-24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22,000,000	20,000	
41	2018-08-24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22,000,000	20,000	
42	2018-09-07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12,800,000	20,000	
43	2018-09-07	도고코미디한페스트용역비		13,530,000	20,000	
44	2017-10-17	짚풀문화제 홍보비		15,000,000	20,000	
45	2017-11-02	지역예술단체조형물 용역비		16,500,000	20,000	
46	2018-02-19	문화재단 10주년기념 영상물제작 용역비		20,250,000	20,000	
47	2018-02-19	문화재단 10주년기념 영상물제작 용역비		10,300,000	20,000	
48	2018-11-06	배방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용역비		10,000,000	20,000	
49	2017-12-29	아산은행나무센터 청소용역비		42,600,000	40,000	
50	2018-03-13	아산은행나무센터 하자보수비	11,253,000	20,000		

연번	계약일	계약 분야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인지세액	비고
51	2017-11-29	수능탈출콘서트용역비	비공개	21,991,000	20,000	
52	2016-12-21	얼음썰매장 용역비		21,890,000	20,000	
53	2016-12-21	얼음썰매장 용역비		10,862,000	20,000	
54	2017-02-22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개막전 공연비		66,000,000	70,000	
55	2017-02-24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개막전 용역비		15,000,000	20,000	
56	2017-04-05	브랜드공연 공연비		11,000,000	20,000	
57	2017-07-20	브랜드공연 공연비		14,000,000	20,000	
58	2017-11-23	브랜드공연 공연비		22,000,000	20,000	
59	2018-04-13	브랜드공연 공연비		15,000,000	20,000	
60	2018-07-16	브랜드공연 공연비		24,990,000	20,000	
61	2018-07-10	기획사업 용역비		22,000,000	20,000	
62	2018-06-14	브랜드공연 공연비		26,125,000	20,000	
63	2018-04-23	문화재단 소식지 용역비		14,938,000	20,000	
64	2018-10-18	브랜드공연 공연비		16,500,000	20,000	
65	2018-08-16	기획사업 용역비		22,000,000	20,000	
66	2018-11-14	문화재단 소식지 용역비		14,553,000	20,000	
67	2018-07-30	기획사업 용역비		22,000,000	20,000	
68	2018-09-13	기획사업 용역비		21,538,000	20,000	
69	2018-12-19	해맞이한마당용역비		13,000,000	20,000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도급계약 시 미 징수한 인지세액을 전액 추징하시기 바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용역 선금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아산문화재단에서는 2017 ~ 2018년 간 13건의 행사운영 용역 선금을 지급하면서 선금보증서를 징구하였다.

[붙임 1] 선금보증서 징구 현황

나. 위법·부당내용

- 「아산문화재단 운영규정」 제5편 제5장 제52조(선급금과 개산금)에 의하면 단일 계약금이 1천만 원 이상의 공사나 제조 또는 물건 매입의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공연준비금 및 공연료 등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정산하고 그 지급금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6조(계약)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 사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하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

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 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아산문화재단에서는 [붙임 1] 선금보증서 징구 현황과 같이 선금금 채권확보를 위하여 용역계약 13건에 대하여 보증서를 징구하면서 보증기간을 계약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계약종료일과 동일기간으로 하여 반환사유 발생 시 채권확보를 불투명하게 하였다.

[붙임 1] 선금보증서 징구 현황

(단위:원)

연번	계약명	계약업체명	선금 지급액	계약기간 (선금보증기간)	비고
1	<2017 제4회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행사 홍보 용역비 선금 지급	비공개	5,500,000	2017.7.27. ~ 2017.9.24.	
2	<2017 제4회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행사용역(연출,작가,온라인생중계) 선금 지급		11,000,000	2017.7.27. ~2017.9.24.	
3	<2017 제4회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행사운영 용역비 선금 지급		27,500,000	2017.7.28. ~ 2017.9.24	
4	<2017 제4회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행사 용역 선금지급		11,000,000	2017.8.8. ~ 2017.9.24.	
5	<2017 제4회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행사 용역 선금지급		11,000,000	2017.8.1. ~ 2017.9.24	
6	<2017 제4회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행사 용역 선금지급		11,000,000	2017.8.9. ~ 2017.9.24.	
7	<2017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사전행사 "제19회 이순신학술세미나" 용 역(순천향대학교) 선금 지급		34,000,000	2017.4.4. ~ 2017.6.17.	

8	<2017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행사운영 용역비(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 협회) 선금 지급	비공개	7,000,000	2017.4.26. ~ 2017.4.30.	
9	<2018 제21회 신정호 별빛축제>볼금엔 밴드 공연팀 부활 선금급		4,950,000	2018.7.24. ~ 2018.8.11.	
10	<2018 제5회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행사용역 선금		11,000,000	2018.8.24. ~ 2018.9.30.	
11	<2018 제5회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행사운영 선금		10,000,000	2018.8.24. ~ 2018.9.30.	
12	<2018 제5회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행사용역 선금		11,000,000	2018.8.24. ~ 2018.9.30.	
13	<2018 제5회 도고 코미디 핫 페스트> 행사용역 선금		11,000,000	2018.8.24. ~ 2018.9.30.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선급금 지급 시 관계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채
권이 불확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행사 출연 사례금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징구 부적정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아산문화재단에서는 2017 ~ 2018년 간 13건의 공연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징구하였다.

[붙임 1] 지역개발공채 징구 현황

나. 위법·부당내용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건설공사·용역 계약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2.5%,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1.5%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세출예산 과목해소에 따르면 세미나, 공청회, 체육행사, 예술행사 등의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에 대하여는 보상금(301)으로 편성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아산문화재단에서는 [붙임 1] 지역개발공채 징구 현황과 같이 예술행사의 연출자 및 공연 출연자의 참여에 대한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용역계약에 준해 처리하여 2017 ~ 2018년 까지 총 13건 1,050,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부적정하게 징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붙임 1] 지역개발공채 징구 현황

(단위:원)

연번	지급건명	지급대상	지급액	공채징구액	지출일	비고
합계				1,050,000		
1	<2017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홈 개막전> 공연비 선금 지급	비공개	1,800,000	45,000	2017.02.17	
2	<Falling in Ballon> 선금지급		4,343,500	105,000	2017.09.11	
3	<2017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연출(지정환) 용역비 선금 지급		5,250,000	130,000	2017.02.14	
4	<2017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조연출(이무진) 용역비 선금 지급		3,750,000	90,000	2017.02.14	
5	<2017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무대감독(윤소라) 용역비 선금 지급		3,750,000	90,000	2017.02.14	
6	<2017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운영감독(하기연) 용역비 선금 지급		3,750,000	90,000	2017.02.14	
7	<2017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개막식 공연비(조PD) 선금 지급		3,000,000	75,000	2017.04.14	
8	<2017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개막식 공연비(송창식) 선금 지급		3,000,000	75,000	2017.04.14	
9	<2017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폐막식 공연비(신형원) 선금 지급		1,500,000	35,000	2017.04.19	
10	<2018 제57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428시민 대화합창 운영 용역 선금		4,500,000	110,000	2018.03.27	
11	<2018 제21회 신정호별빛축제> 가족 듀엣 경연대회 축하공연 선금급		4,200,000	105,000	2018.08.09	
12	<2018 제21회 신정호별빛축제> 가족 듀엣 경연대회 축하공연 선금급		1,200,000	30,000	2018.08.09	
13	<신진작가 협업전시> 선금		2,875,000	70,000	2018.06.25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행사 출연계약 시 영리 법인(도급계약) 등과 개인 및 비영리 단체(출연 사례금)를 엄밀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 주시고, 개인 및 비영리 단체의 행사 출연 사례금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등 도급계약 관련 회계문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계약업무 일상감사 미이행
-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 【행 정 상】 주 의
- 【재 정 상】 없 음
- 【지적내용】

가. 현 황

○ 용역계약 일상감사 미이행 내역

계 약 명	발 주 일	발주금액 (천원)	업체명	일상감사 실시여부	비고
<2017 제56회 아산성웅 이순신축제> 특설무대 설치·운영 용역	2017.4.21.	139,700	0000	미실시	

나. 위법·부당내용

○ 2017.4.5.개정된 「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아산시 본청의 실·과·담당관,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아산시의회 사무국, 읍·면·동,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단, 시에서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2017.4.5.신설)은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등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 계약업무 중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원을 초과(2017.11.27. 개정 후 7천만 원)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아산문화재단에서는 위와 같이 2017.4.21.자 발주금액 139,700천원의 <2017 제56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특설무대 설치·운영 용역을 시행하면서 「아산시 일상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방법, 추진방향 등의 적법성, 타당성을 아산시 감사부서에 심사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 등의 제도를 숙지하여 심사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제 목】 임직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 【행 정 상】 시 정
- 【재 정 상】 없 음
- 【지적내용】

가. 현 황

- 아산문화재단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한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감사일(2019.1.) 현재 임직원 5명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종사자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현황

(단위:원)

소 속	성 명	직계비속 성명	생년월일	부적정 지급기간	초과 지급액	사유	비고
합 계					220,000		
아산 문화 재단	AAA	BBB	1999.6.30.	2018.11. ~ 12.	40,000 (2만원×2개월)	직계비속 연령 초과	
	CCC	DDD	1999.3.5.	2018.4. ~ 12.	180,000 (2만원×9개월)	"	

나. 위법·부당내용

- 2018.1.1.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월 4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자녀에 대하여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로 한정하였다.

- 그럼에도 아산문화재단에서는 2018.1.1.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자녀에 대한 제한 연령이 만 19에 미만(당초만 20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자체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위 현황과 같이 1999년생 자녀로 만 19세가 초과된 2명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총 220,000원을 과다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자체 보수규정의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건 미충족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계약직 연봉등급 조정 및 승진임용 부적정

【기 관 명】 아산문화재단

【관계부서】 문화관광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아산문화재단의 종사자는 계약직 7명, 공무원직 1명, 기간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일(2019.1.) 현재 계약직은 나급 1명, 다급 2명, 라급 1명, 마급 3명으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연봉 한계액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법·부당내용

[계약직 연봉등급 조정 부적정]

- 「아산문화재단 운영규정」 제4편 제3장 제14조(봉급)에 의하면 임·직원의 연봉액과 봉급액은 “별표 1”의 해당 연봉 또는 봉급 기준표와 같으며 계약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중 계약직공무원보수표를 준용하고 변경 시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문화재단에 계약직 종사자가 채용된 2010년도 이후 계약 나급 ~ 마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한 임기제 계약직공무원 나급 ~ 마급(현재 6급상당 ~ 9급상당³⁾)의 연봉 한계액에 따라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당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는 계약직을 가급 ~ 마급으로 구분하였으나 2013.12.11.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5급상당 ~ 9급상당으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 봉급표를 개정하였으며, 가급은 5급상당, 나급은 6급상당, 다급은 7급상당, 라급은 8급상당, 마급은 9급상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그럼에도 아산문화재단에서는 지방공무원 계약직 구분에 따라 가급 ~ 마급 연봉한계액에 따라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해오던 중 2017.12.20. [표 1]의 직원 봉급기준표를 해당 직급에 상당하는 연봉 인 것으로 착오 해석하여 계약직 전직원에 대하여 1등급 상향하고 연봉 재계약한 결과, [표 2]연봉 변경계약 내역과 같이 최저 12.3%에서 최고 37.7%에 상당하는 연봉 과다 인상을 초래하였다.
- 이에 대하여 아산문화재단에서는 계약직 직원 연봉등급기준을 1등급 상향 조정한 것은 착오해석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표 1] 직원의 봉급기준표

공무원 재 단	기 준 표				비 고
	공무원5급	공무원6급	공무원7급	공무원8급	
2 급 (계약나급)	당해호봉 상당				
3 급 (계약다급)		당해호봉 상당			
4 급 (계약라급)			당해호봉 상당		
5 급 (계약마급)				당해호봉 상당	
공무직 (무기계약)	아산시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임금협약서 준용				

[표 2] 연봉 변경계약 내역(2017.12.20.)

연번	직 급	성 명	보수 적용 직급 (공무원 기준)		연 봉 (단위:천원)		인상률(%)
			현 직급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1	계약 나급	000	6급 상당	5급 상당	48,303	56,338	16.6
2	계약 다급	000	7급 상당	6급 상당	40,657	46,670	14.7
3		000			40,657	46,670	14.7
4	계약 라급	000	8급 상당	7급 상당	36,181	40,657	12.3
5		000			35,823	40,657	13.4
6	계약 마급	000	9급 상당	8급 상당	31,661	35,823	13.1
7		000			28,000	35,823	27.9
8		000			26,000	35,823	37.7

[계약직 승진임용 부적정]

- 「아산문화재단 운영규정」 제3편 계약직 관리규정에 의하면 계약직 직원은 재단 인사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여 전문적인 지식, 경력, 업무량 등을 감안, 직위별 대우로 구분 채용하며,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사유, 채용예정 직종 및 등급, 담당예정 직무 및 부서, 채용기간, 소요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계약직 직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연봉제 급여를 기준으로 2급(나급) 이상은 2년간으로 하고 연장계약을 할 수 있으며, 3급(다급) 이하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근무실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규정 제10조(보직 및 겸직)에 따르면 전임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직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아산문화재단에서는 2018년 2월 문화예술팀장(계약다급)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승진을 검토하였고, 자체 계약직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직은 겸직 또는 필요 직위를 부여할 수 있을 뿐 승진에 관한 사항은 정함이 없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종사자의 결원 발생 시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 공개 채용함이 타당함에도 계약다급 000을 계약다급으로 승진 임용 및 기간 연장⁴⁾ 재계약하고 당초 연봉 40,657천원 대비 6,013천원 인상된 46,670천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인건비 과다지출을 초래하였다.

- 이에 대하여 아산문화재단에서는 계약직에 대하여 축제준비 등 당면업

4) (당초) 2016.9.17. ~ 2018.9.16. (변경) 2018.5.1. ~ 2020.4.30.

무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일반직 인사 규정에 준해 계약라급 이명갑을 계약다급으로 승진 임용하였으나, 규정을 착오 해석한 것을 인정하고 감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처분요구】

아산문화재단 이사장은

- 보수규정의 착오해석에 기인한 계약직 종사자 연봉 등급 상향 계약 및 근거 없이 승진 임용한 계약직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재계약 추진하시기 바라며, 향후 인사 및 보수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문화관광과장은

- 아산문화재단의 회계 및 급여관련 업무처리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권고)